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69호
----------	--------

제출년월일 2026. 7. 8.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직제를 반영하여 위원회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장 직위 변경(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생략(「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팀

- 나) 경 기 도 :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서장”을 “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재난안전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재난안전과장 류 규 형
	팀장 직위·성명	안전점검팀장 이 상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김 혜 린(☎549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u>부서장이</u>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 <u>국장</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소속으로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김포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